

# 지도교수제 운영 지침

제정 2025. 11. 24.

## 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학생의 학업, 진로 및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제의 운영 기준, 절차, 지도교수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 범위)

이 지침은 본교 학부 학생 및 지도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교원, 교육중점교원에게 적용한다.

## 제3조(정의)

- ① 지도교수란 학생의 학업계획, 진로설계,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.
- ② 지도면담이란 학생의 학업계획, 진로설계, 대학생활 적응 등에 관해 지도교수가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기록을 작성·관리하는 공식 절차를 의미한다.
- ③ 주전공 지도교수란 학생의 소속(주전공) 학과에서 배정된 지도교수를 말한다.
- ④ 다전공 지도교수란 복수·부·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복수·부·융합전공 학과(부)장에서 배정된 지도교수를 말한다.

## 제4조(주관 부서)

- ① 지도교수제의 운영 및 관리는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.
- ② 지도교수 학생배정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(부)장이 담당한다.

## 제5조(지도교수 배정)

-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과(부)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배정하며, 지도교수의 임기는 배정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.
- ② 신입생은 입학 후 1주일 이내에 학과(부)별로 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- ③ 지도교수는 학년별로 균형 있게 지도학생을 배정하며, 1인당 지도 가능한 학생 수는 학과(부)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전과 학생의 경우에는 전입한 학과(부)에서 지도교수를 재배정한다.
- ⑤ 학생이 복수·부·융합전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다전공 지도교수를 추가 배정한다.

## 제6조(지도교수 변경)

- ①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할 경우,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과(부)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지도교수가 휴직, 연구년, 파견 등으로 장기 부재할 경우, 학과(부)장은 대체 지도교수를 즉시 지정한다.
- ③ 지도교수가 정년퇴직하거나 면직된 경우, 학과(부)장은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## 제7조(지도면담의 운영)

-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업, 진로,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도면담은 학기별로 정기면담과 필요 시 수시면담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③ 정기면담은 매 학기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실시 시기 및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1차 면담(학기 초, 3~4월 / 9~10월): 학업계획 및 학습목표 설정, 수강지도 등 학업 준비 단계 상담
  2. 2차 면담(학기 중, 중간시험 전후): 학습진도 점검, 생활적응 및 진로 방향 중간 점검
  3. 3차 면담(학기 말, 기말시험 후): 학업성과 점검 및 피드백, 향후 학기 계획 수립 및 진로·취업 준비 방향 설정
- ④ 정기면담 외에도 학생의 요청이나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, 장기결석자, 복학생, 다전공 이수자 등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수시면담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⑥ 지도면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(화상 또는 전화)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⑦ 지도교수는 면담 결과를 CAAM(학생역량관리시스템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## 제8조(다전공 지도교수 배정)

- ① 복수전공, 부전공 또는 융합전공 허가자는 해당 학과(부)의 다전공 지도교수를 추가로 배정 받는다.
- ② 다전공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(부)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(과)장이 지정한다.
- ③ 다전공 지도교수는 학생의 다전공 교과이수계획, 전공별 졸업요건 충족 여부,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.

## 제9조(다전공 지도면담의 운영)

- ① 다전공 지도교수는 학기별 1회 이상 다전공 허가자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.

② 다전공 지도교수는 면담 결과를 CAAM(학생역량관리시스템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### **제10조(비밀유지)**

지도교수 및 관련 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**부칙**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지침 시행 이전에 배정된 지도교수는 본 지침에 따라 학기별 면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